

국회에서 의결된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3월 26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관 이상민

국무위원  
보건복지부관 조규홍

● 법률 제20412호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조에서”를 “조 및 제9조의2에서”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경찰관서와”를 “경찰관서의 장과”, “목적”을 “경찰관서의 장은 목적”로 한다.

제9조의2 및 제9조의3을 각각 제9조의3 및 제9조의4로 하고,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실종아동등 발견을 위한 정보 제공 요청 등) ① 경찰관서의 장은 실종아동등의 조속한 발견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그 소속기관 및 책임운영기관을 포함한다)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교육감을 포함한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법인·단체의 장 및 개인에 대하여 실종아동등의 위치 확인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를 통하여 수집된 정보
2.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교통카드의 사용명세
3.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3호·제6호 및 제8호에 따른 신용카드·직불카드·선불카드의 사용일시, 사용장소
4. 「의료법」 제17조의2에 따른 처방전의 의료기관 명칭, 전화번호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진료기록부등의 진료일시

② 경찰관서의 장과 경찰관서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제1항에 따라 제공받은 정보를 실종아동등을 찾기 위한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경찰관서의 장은 목적을 달성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파기하여야 한다.

③ 경찰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정보가 수집된 실종아동등의 보호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1. 실종아동등 발견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가 수집되었다는 사실
2. 수집된 정보는 이 법에 따른 실종아동등 발견 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목적 달성 시 지체 없이 파기된다는 사실

④ 제1항에 따른 정보 제공 요청 방법, 제2항에 따른 정보에 대한 파기 방법 및 제3항에 따른 통지

의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 중 “제7조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실종아동등을 보호한 자 및 제9조제4항을 위반하여 개인위치정보등을 실종아동등을 찾기 위한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한”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7조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등을 보호한 자
2. 제9조제4항을 위반하여 개인위치정보등을 실종아동등을 찾기 위한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한 자
3. 제9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제공받은 정보를 실종아동등을 찾기 위한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한 자

제1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2(벌칙) 제9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서의 장의 요청을 거부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9조제1항제1호 중 “제9조의3제2항을”을 “제9조의4제2항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3호 중 “제9조의3제3항에”를 “제9조의4제3항에”로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률 제20357호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2025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법률 제20357호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3조제7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⑦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4제2항제2호 중 “유원시설”을 “테마파크”로 한다.

②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호바목 중 “제9조의3제2항”을 “제9조의4제2항”으로 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실종아동을 보다 신속하게 발견할 수 있도록 경찰관서의 장이 실종아동의 위치 확인에 필요한 정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요청하여 제공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제공받은 정보를 실종아동을 찾기 위한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의 위치 확인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을 거부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